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4가단29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2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